Monthly Legal Update - 2022. 09.

DR & AJU LLC I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기업

최신 판례

대법원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22. 9. 7.)

◆ **사안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원고인 주주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
◆ **쟁 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 인과관계'의 인정범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액 산정 방법

- 1심: 원고 패, 원심: 원고 패

입 법 (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D2E0S3U1A4W0V9T0Y2V0X1D9L0G2

◆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9나66541 이사 해임

- 판시사항: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기존 주주인 원고, 소외 1,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418조, 제419조에서 정한 공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하여 원고 등을 배제하고 피고 2와 소외 3에게만 신주를 배정하였는데 이것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인지의 여부, 피고 2가 이 사건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하였고 이것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인지의 여부
[2]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피고 2의 일련의 행위는 신주발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 내지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볼 수 없어 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 2가 피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하였다거나 또 다른 해임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판결요지:
[1]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같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에 견줄 정도로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에 심히 위배하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림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가리킴
[2]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628조 위반의 범죄행위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 30.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2 해임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따라서 피고 2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상당함

주요 이슈

[한국경제] 침수차 검사 안 하면 처벌받는다
[펜앤드마이크] 테라 창업자 권도형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공정거래

최신 판례

대법원 2019도190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선고일자: 2022. 9. 16.)

◆ **사안의 개요:**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 지점을 개설하자 그 직후에 인접한 거리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설치하는 등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 원의 이익을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 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의 행위 요건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의 적용법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행위 요건, 부당성 요건

- 1심: 피고인 정○○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일부 인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1억 원 선고), 원심: 피고인 정○○에 대하여 유·무죄 판단 일부 바뀌었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 유지

입 법 (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 범위 조정 △동일인관련자 중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유예제도 개선 등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473?lsNm=%EA%B3%B5%EC%A0%95%EA%B1%B0%EB%9E%98

◆ **관련판례**
대법원 2017두6399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 판시사항:
[1] 기업집단 甲에 속하는 회사들 간 내부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 3]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거래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이나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해당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함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함

주요 이슈

[매일경제] 공정위 '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1억원
[데일리안] 공정거래위원장 "중기부의 기업 고발 요청 3개월로 단축 논의"

행정 · 노무

최신 판례

대법원 2018다251486 해고 무효 확인 등
(선고일자: 2022. 9. 15.)

◆ **사안의 개요:** 피고(사용자)는 원고(근로자)에게 조직개편과 인사평가의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그 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저조한 업무수행평가를 받아 보직을 부여 받지 못하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과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및 해고 시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 점:**

(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대기 발령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 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 규칙상 해고 사유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심: 원고 패, 원심: 항소기각

입 법 (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J2K0D8U1G2M1T0X0W7L1F4H8K1J4

◆ **관련판례**

대법원 2016다11226 판결 [손해배상(기)등]

– **판시사항:**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다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함. 원고가 피고들 등이 참여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요 이슈

[경향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올해에만 건설노동자 3387명 다치거나 숨졌다"
[서울신문] "여수산단 사고, 중대재해 처벌이 명약 될까?"

IP(바이오)

최신 판례

대법원 2020후11479 거절결정(특)
(선고일자: 2022. 9. 7.)

◆ **사안의 개요:** 원고가 원출원을 출원할 당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출원일 전 공개된 원고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자, 이 사건 출원발명을 분할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고, 원출원 신청은 취하한 사안

◆ **쟁 점:**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 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로부터 분할하여 출원한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원심: 원고 패

입 법 (안)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2P0F8H0I8B1I0U2N9R2U0T3T3A2

◆ **관련판례**

대법원 2013도2511 국가보안법위반

– **판시사항:**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

– **판결요지:**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함.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님.

주요 이슈

[조선일보] 유튜버들, 野 의원에 "밥줄 끊긴다" 문자 폭탄… 망사용료 뭐길래
[이데일리] '우영우' 이어 '수리남'도…IP 지키려면 불법 유통 막아야

담당 변호사 및 전문 인력

BD 총괄본부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기업송무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행정 · 노무



김광수
파트너변호사
T : 02-3016-7405
E : kskim2@draju.com

IP(바이오)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공정거래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